



보도시점

2026. 2. 23.(월)
브리핑 시작(14:30) 이후

배포

2026. 2. 23.(월)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 발표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 -
- 최초의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계획 마련 의의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주요내용】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최초로 수립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의 4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 분야별 주요 과제 (4대 추진전략,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 전략 1 -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이용
 -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 확충 추진하고, 전담창구,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 진료 편의성이 집적된 **가칭 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확대해나간다.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 **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
 - 진료시 장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방안 연구·마련,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제도 개선,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 종사자 직접 교육 실시 등으로 장애 포용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 외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이동을 지원하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 검토, 저소득층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의료 관련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 전략 2 -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 거주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퇴원 장애인 대상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 내 전문적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대 지정한다.
- 지역 내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퇴원 후 생활체육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전국에 확산한다.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등

○ 전략 3 -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 방문재활 등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112개소 이상 운영하고, 검진 유소견자는 후속 진료안내,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 소수장애인 등록기준 개선,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개입 강화, 생애 주기를 고려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의료수어 표준화 등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전략 4 - [정책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시 장애인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장애인 건강보험 데이터 심층분석 등 근거 기반 정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정책개발, 지자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지원 등을 위해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보유율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 (미충족 의료이용률) 장애인 17.3%, 전체인구 5.3% (23년 장애인실태조사)
(만성질환 보유율) **고혈압** 장애인 52.8% > 비장애인 21.7%, **당뇨** 장애인 34.7% > 비장애인 14.5%

이에 정부는 장애인단체, 의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중점전략으로 하여 12대 주요과제 및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략 1.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 이용

기존에 산부인과, 검진기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지정하여, 중등증·복합질환 진료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 편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가칭)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2030년까지 확대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는 가운데, 장애인 의료 사업을 기 수행 중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기능을 부여하고 3개 이상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의료 전반에 장애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장애인 진료는 장애 특성에 따라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가 있다. 이를 고려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에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각종 의료기관 평가 시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해 일반 의료기관에도 장애 포용적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 (유사사례) 뇌병변 정신 발달장애인은 치과 관련 특정 처치, 수술에 대해 수가가산 300% 적용 중

또한, 의료인력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비장애인 전문강사 교육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식교육과 장애인 진료현장 체험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울산, 세종)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발맞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가 지역별 통합지원 사업 모델 개발 및 보건의료 자원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외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구급차 이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모델(울산시 사례 등)과 같은 우수 사례도 확산한다.

중증장애인 입원 시 간병 지원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인력 배치 강화,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복·정기적 입원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교부도 지원대상과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 전략 2.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 특히, 권역재활병원 특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재활의료기관 간 차별화된 기능을 강화한다.

소아 재활 전문기관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하고 공공재활프로그램, 기관 간 협력체 구축 등으로 아동의 지속적인 재활도 지원한다.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퇴원 후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7년 본사업 전환하면서 지원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 외에도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의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한다.

* (예) 시설당 간호사 1명→ 중증·영유아 거주시설에 간호사 1명 추가배치 검토 등

중도(重度)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상주, 순회)하여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의 중간 고리인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체육시설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단기적으로 국립재활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장애인건강권법령」을 정비해 장기적으로 전국 확산을 도모한다.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등

◇ 전략 3.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또한,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사업 성과 평가, 다학제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등 지속 개선해 나간다.

일상 속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당연지정기관*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장비 기준도 개선해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당연지정기관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역 설치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 확대 설치한다. 또한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충족 필요

장애유형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장애 신설과 더불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장애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방안을 세심히 살핀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중재·복지 지원강화 위해 시·도 장애 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인원을 확대하여 기능향상, 행동발달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지속 확충한다. 시설·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 추진한다.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시각·청각·발달·언어 등 다양한 장애유형이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수어 표준화도 추진한다.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전국 확산을 위해 고위험 분만은 모자의료 전달체계로 연계하고, 지정기준을 부인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전략 4. [정책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비급여 진료 비용,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검토하고, 단년도 통계 발표와 더불어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의 중장기 건강 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발 및 시범적용(테스트베드 역할)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자체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시 관련 정보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정보를 알지 못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이후 매년 이행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성과지표 달성도 등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전략체계도
 2.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3. 2026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별첨>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책임자	과장	임현규	(044-202-3190)
		담당자	사무관	김소민	(044-202-3188)
			서기관	이태호	(044-202-3191)
			사무관	권봉목	(044-202-3194)
			사무관	이지연	(044-202-3198)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문수	(044-202-3280)
		담당자	서기관	박승빈	(044-202-3285)
			사무관	두유림	(044-202-3299)
			사무관	배종우	(044-202-318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책임자	과장	이춘희	(044-202-3310)
		담당자	사무관	이왕석	(044-202-3309)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장	김민정	(044-202-3320)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2-3321)
			사무관	안미경	(044-202-3328)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이고운	(044-202-3340)
		담당자	사무관	나민정	(044-202-3347)
			사무관	이대복	(044-202-3350)
			주무관	이민영	(044-202-3345)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책임자	과장	유정민	(044-202-2730)
		담당자	사무관	이민정	(044-202-2733)
			사무관	정귀영	(044-202-273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책임자	단장	공인식	(044-202-2790)
		담당자	사무관	강현주	(044-202-279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장	신현두	(044-202-2920)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044-202-2472)
			사무관	배홍석	(044-202-247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장	하태길	(044-202-3530)
		담당자	사무관	김희영	(044-203-2696)
담당 부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책임자	과장	진창원	(044-203-6554)
		담당자	연구관	오영석	(044-203-6549)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책임자	과장	신보미	(044-201-3797)
		담당자	사무관	류나린	(044-201-4772)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책임자	과장	홍덕호	(044-203-3181)
		담당자	사무관	백혜빈	(044-203-3179)
담당 부서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책임자	과장	김유미	(043-719-7380)
		담당자	사무관	김은경	(043-719-7387)
담당 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규	(043-719-7120)
		담당자	사무관	송신정	(043-719-7128)



<기본 방향>

- ◇ ^아플 때-^회복할 때- ^건강할 때 등 장애인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추진
- ◇ 체계적 건강보건관리 위한 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등 정책 인프라 개선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

핵심목표

“쉬운 의료서비스 이용”

미충족 의료이용률 감소
 ('23년) 17.3% → ('30년) **16.4%**
 * 전체 인구 5.3%

“재활을 통한 삶의 회복”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
 ('23년) 20.1일 → ('30년) **15.5일**
 * 전체 인구 2.7일

“일상건강수준 제고”

주관적 건강인지율 향상
 ('23년) 20% → ('30년) **25%**
 * 전체 인구 36.2%

4대 추진전략

주요과제

I.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이용

- ① 장애 포용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 ② 의료기관 이동 및 접근성 개선
- ③ 의료 관련 비용 부담 완화

II.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 ① 재활의료 확충 및 개선
- ②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 지원
- ③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III.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 ① 일상 건강관리 지원 확대
- ②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효과성 제고
- ③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지원

IV. [정책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 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거버넌스 개선
- ②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 구축
- ③ R&D를 통한 미래 기술 확보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아플 때부터 회복·일상까지
장애인의 건강을 끊임 없이 지원합니다



2026. 2. 23.
보건복지부

아플 때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진료 지원

-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 감소

2023년 17.3% → 2030년 16.4%

※ 전체 인구 5.3%(2023년 기준)

- 한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가칭)장애친화병원 지정

2025년 0개소 → 2030년 8개소

- 의료기관 편의시설 현황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 단차 제거, 경사로, 주차구역, 출입구,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회복할 때

퇴원 후에도 살던 곳에서 주기적인 치료와 서비스 지원

-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 단축

2023년 20.1일 → 2030년 15.5일

※ 전체 인구 2.7일(2023년 기준)

- 재활의료 제공기관 확충

권역재활병원 +2개소(2027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3개소(2027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최대 +35개소(2027년)



-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본격 추진 등
퇴원 후에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건강할 때

일상 건강관리와 주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 주관적 건강인지를 향상

2023년 20% → 2030년 25%

※ 전체 인구 36.2%(2023년 기준)



-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일상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확충

2025년 25개소

→ 2027년 112개소



정책 인프라

보다 세밀하게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

- 국가 건강 통계에 장애인 구분 추가

- 지역사회건강조사 항목에 장애인등록현황 포함 등

-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문성 강화



아플 때 병원 가는 일이 어렵지 않고, 병원 이용이 편리하도록

1 '의료환경'을 장애인 진료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의료기관 확충

- 한 곳에서 다양한 진료과목·편의지원 이용 가능한 ^(가칭) 장애친화병원 지정

^(가칭) 장애친화병원이란?

장애친화 의료기관¹⁾ 세부 기능이 3개 이상²⁾ 집적된 의료기관

- 1) 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각종 평가제도 개선 및 교육을 강화하는 의료기관
-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2·3차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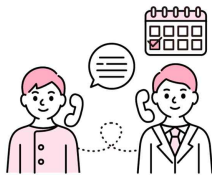
- ☑ 장애친화 산부인과
-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 ☑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예약·진료·수납 전 과정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중증장애인 우선진료·진료동행)

<장애인의 전용창구 이용 시 진료 과정>

예약(전화)



- 진료예약
- 협진 스케줄 조정
- (필요 시) 이송 차량 배치 지원

접수



- 전용창구에서 접수 (보조인력 등 동행)

진료



- 협진 스케줄에 따른 one-stop 진료
- 수어통역사 등 전담 보조인력 동행

수납



- 전용창구에서 수납 (보조인력 등 동행)

-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장비·인력 갖춘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속 확충

<장애친화 의료기관 연도별 확충 계획>

장애친화 의료기관	설치 개소수(시·도)		
	2025년	2027년	2030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개소 (8개 시·도)	15개소 (13개 시·도)	➔ 주요 시·도 1개소 이상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25개소 (12개 시·도)	112개소 (17개 시·도)	➔ 추가지정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3개소 (10개 시·도)	16개소 (13개 시·도)	➔ 20개소 (17개 시·도)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기관	5개소 (3개 시·도)	10개소 (8개 시·도)	➔ 주요 시·도 1개소 이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개소 (15개 시·도)	19개소 (17개 시·도)	➔ 발전방안 마련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16개소 (15개 시·도)	18개소 (17개 시·도)	➔ 시·군·구 확대
 (가칭) 장애친화병원	-	4개소	➔ 8개소

* 재정 여건과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진료에 대한 보상과 편의시설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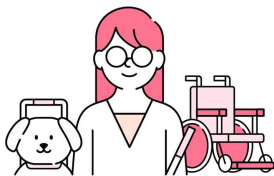
- 투입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장애인 진료에 대해 걱정하게 보상하는 체계 마련
- 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식 교육 확대(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교육 실시)

- 병원 가기 전 주출입구, 주차구역, 화장실 등 병원 편의시설 현황* 정보 제공

* 단차 제거, 경사로, 주차구역, 출입구, 장애인전용 화장실승강기, 시각·청각장애인 안내설비 등

-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② 의료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 교부 품목 및 지원 인원 확대

* (예시) 보조기기 교부 품목 확대: (2025년) 44종 → (2029년) 50종



- 중증장애인의 간병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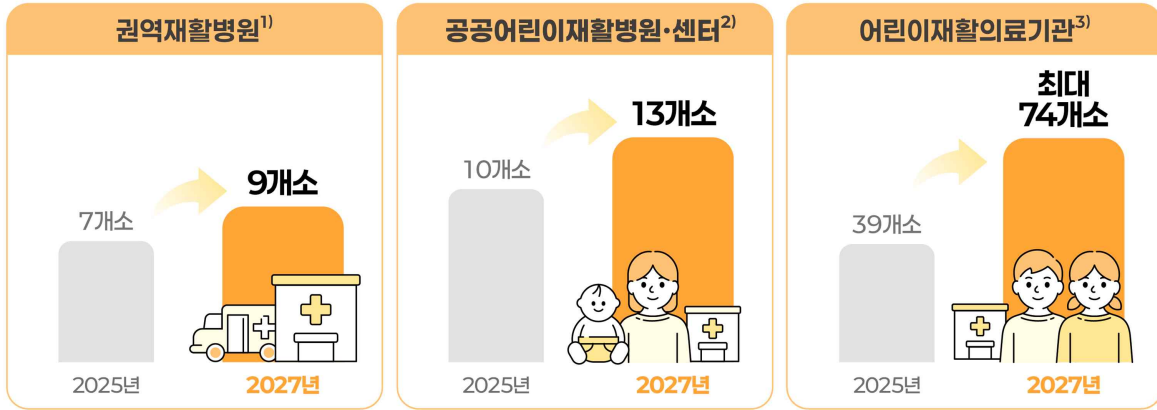
* (예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 인력 배치강화,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 반복·정기입원이 불가피한 중증질환자 활동지원 이용 기준 개선 검토 등



회복할 때 퇴원 후에도 살던 곳에서 치료와 서비스를 이어가도록

① 사는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의료 제공기관 확충



- 1) 권역재활병원: 광역 단위로 건립하여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 병원. 복잡한 재활·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주로 담당
-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역 내에서 소아재활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설립·지원하는 어린이 전문 재활의료기관
- 3)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소아재활(운동·작업·언어재활 등)을 제공하며, 지역 내 장애 어린이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포함

② 퇴원 후에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본격 추진(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방문재활 등 재택 기반 서비스 연계

- 퇴원 장애인에게도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 주거환경개선비·건강검진비·보조기기 구매비 등 연계 지원

- 중증장애인에게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확충

- 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교 내 간호사 배치·방문



③ 생활체육·재활운동 등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 의사 소견(처방) 등에 따른 전문가의 재활운동 등 프로그램 제공 (보행·근력운동 등)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따른 프로그램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지원



건강할 때 2차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1 일상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에게 받는
건강관리(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 확대



2 건강검진이 쉬워지고, 검진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전국 100개소 이상
운영·확충(현재 25개소)

* 시설기준 합리화, 장비 최신화 등 제도 개선

- 건강검진을 받기 힘든
항목과 이유 등을 분석해
대안 검사방안 연구

- 검진 후 유소견자
→ 후속 검사 안내,
건강교육 등 제공

3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소수장애인
취장장애 신설 및 소수장애인
인정범위 확대 등 등록기준 개선



- 발달장애인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통한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 청각장애인
의료수어 표준화 및 확산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중심에서 여성암·부인과 진료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으로 전환

정책 인프라 보다 세밀히 장애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1 장애인 건강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 국가 건강 통계에 장애인 구분 추가

* 지역사회건강조사 항목에 장애인등록현황 포함,
감염병 실태조사 통해 장애인 감염병 관리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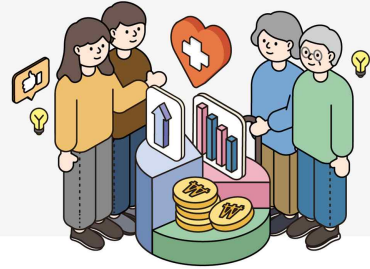
- 장애인 건강 현황 심층 분석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비급여 진료 비용 등 발표 항목 확대 및
시계열 분석, 장애유형별 코호트 구축 등






2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중앙센터) 현장에 필요한 사업 개발, '신규 사업을 먼저 시험해보는 역할' 강화
- (지역센터) 장애 등록 신청 정보 연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2026년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2. 23. 관개부서 합동

 돌봄	 노동	 이동	 문화·미디어	 교육·권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저상 좌석버스 교통약자 편의시설 및 안전 기준 마련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학교 내 중도장애학생 대상 의료지원 확대

1
돌봄

장애인 삶의 질은 높이고, 가족의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서비스 내용		2025년(12월 기준)	2026년
 활동지원서비스 ¹⁾ 확대	대상	13만3천명	➔ 14만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²⁾ 전문수당 인상	종사자 전문수당 ³⁾	월 15만원	➔ 월 20만원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⁴⁾ 확대		3만명	➔ 3만2천명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신설		-	➔ 17개 시·도(전국)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		10만4천명	➔ 11만명
 중증 장애아동 양육지원 시간 확대		연 1,080시간	➔ 연 1,200시간
 장애인정 범위 확대		15개 유형 ⁵⁾	➔ 16개 유형 (취장장애 추가)

1)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가정 방문해 신체·가사·이동 등을 지원
 2)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생활지원, 행동지원, 여가활동 등 1:1 맞춤형 통합돌봄 제공
 3) 돌봄인력(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월 추가 수당
 4) 부모교육, 상담, 가족휴식 등 서비스 제공
 5)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장애



2
노동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2025년(12월 기준)	2026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¹⁾ 지원대상 확대	75만5천명	→ 81만명
 고용개선장려금 ²⁾ 신규 도입	-	→ 월 35만~45만원
 영세 표준사업장 ³⁾ 홍보·마케팅 지원 신설	-	→ 10개소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참여자 훈련수당 인상	일 1만8천원	→ 일 3만5천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축촉진수당 ⁴⁾ 인상	월 50만원	→ 월 60만원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성공 인센티브 ⁵⁾ 신설	-	→ 최대 60만원

1) 장애인의 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월 35만~90만원)
 2) 50~99인 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장려금 지급(중증 남성 35만원, 중증 여성 45만원)
 3) 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준수, 편의시설 확충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
 4)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구직장애인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수당 지급(최대 6개월)
 5) 일반사업체로 최저임금 이상 전환 성공 및 고용 유지 시 직업재활시설에 지급(1개월 10만원, 2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3
이동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2025년(12월 기준)	2026년
 저상 좌석버스 교통약자 편의시설 및 안전 기준 마련	-	→ 고시 개정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¹⁾ 참여지역 확대	3개 지방자치단체 시범 (대전, 세종, 충북)	→ 참여 지방자치단체 확대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확대	운영비 2000만원/대	→ 운영비 2100만원/대

1)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앱-전화번호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4
문화·
미디어

여가활동과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2025년(12월 기준)	2026년
 열린관광지¹⁾ 조성 확대 	182개소	➔ 212개소
 반대비 체육센터²⁾ 개소당 건립지원비 증액 	체육관형(30억원) ³⁾ 수영장형(40억원)	➔ 체육관형(40억원) 수영장형(50억원)
 장애예술 우수작품의 지역유통 지원사업⁴⁾ 신규 도입 	-	➔ 3개 작품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⁵⁾ 보급 확대 	3만5천대	➔ 3만7천대

- 1)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 2)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 3) 체육관형에 '수중운동실' 추가 시 10억원 추가 지원(2025년·2026년 동일)
- 4) 모두예술극장의 우수 장애예술작품을 지방에서 실연·유통하여 지방 문화향수 기회 확대
- 5)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시청편의기능(조작 메뉴 음성 안내 등) 탑재



5
교육·
권익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2025년(12월 기준)	2026년
 학교 내 중도장애학생 대상 의료지원¹⁾ 확대 	13개 시도교육청	➔ 16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성폭력 피해상담소 확대 	22개소	➔ 23개소²⁾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확대 	10개소	➔ 12개소³⁾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따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학생에게 흡인·투브 영양공급·배출관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등 제공
- 2) 상담소 추가운영 지역: 경기
- 3) 쉼터 추가운영 지역: 충남(남여 쉼터 각 1개소)

